

산화방지제 (Octamine R)

I 사례 개요

- 사 례 번 호: HQ 556143 (1992.03.02.)
- 쟁 점 사 항: 실질적 변형 여부
- 최종 수출국: 바하마
- 실질적 변형 여부: 불인정



II 사실관계

용도	고무, 플라스틱을 열, 산소 및 반복 굴곡에 따른 균열로부터 보호하는 산화방지제로 사용되며, 항공용 윤활제에도 사용됨	
재료	기타 국가	- 다이소부틸렌 (diisobutylene) - 디페닐아민 (diphenylamine) - 수산화암모늄 - 염화알루미늄
Sourcing 및 공정 흐름도	Sourcing ▾ 기타 국가  다이소부틸렌, 디페닐아민 등 생산 Manufacturing ▾  바하마  STEP 1 외국산 원료 수입 STEP 2 화학반응을 통해 Crude Octamine 제조 STEP 3 정제 공정 수행 STEP 4 Octamine R 생산 Export ▾  바하마 최종 수출	
상세 공정	기타 국가	다이소부틸렌, 디페닐아민, 수산화암모늄 등 생산
	 바하마	- Crude Octamine 제조 - 외국산 다이소부틸렌과 디페닐아민을 반응기에 투입 후 염화알루미늄을 촉매로 사용하여 화학반응 수행 - 반응물을 수산화암모늄 및 온수로 세척 - 순도 85~87%의 디옥틸디페닐아민인 Crude Octamine 생산 - Crude Octamine을 Octamine R로 정제 - Crude Octamine을 냉각 후 다이소부틸렌을 첨가하여 결정화 - 결정물을 원심분리하고 세척 및 건조 - 최종적으로 순도 95~97%의 디옥틸디페닐아민인 Octamine R 생산

III 판정 결과

《신청인의 주장》

- Crude Octamine은 약 13~15%의 불순물을 함유한 저등급 항공용 윤활제로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바하마에서 광범위한 정제 공정은 Crude Octamine을 순도 최소 95%의 고등급 항공용 윤활제인 Octamine R으로 변형시키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CBP의 판정》

- ⊙ 외국산 다이소부틸렌과 디페닐아민 등을 바하마에서 화학반응시켜 Crude Octamine을 제조하는 공정은 원재료를 고유한 화학적 성질과 상업적 정체성을 가진 별개의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며, 최종제품이 원료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 및 화학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함
- ⊙ 다만, 화학물질을 단순히 정제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화학물질이 새로운 명칭, 특성 및 용도를 가진 새롭고 상이한 상거래 물품으로 변형되지 않음
- ⊙ 정제 공정을 통해 Crude Octamine이 Octamine R이라는 고등급 항공용 윤활제가 되는 것은 명백하지만,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으며, Octamine R은 Crude Octamine과 동일한 화학구조, CAS 번호, HS Code를 가지므로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지 않음

➔ Crude Octamine을 Octamine R로 정제하는 것은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지 않음

IV 시사점

- ⊙ 정제로 순도, 등급이 향상되더라도 원재료의 본질적 특성이 유지되면 실질적 변형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종류 등 정제 공정을 통해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다른 새로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음

CBP의 참고 판정 사례

물품명	제트연료
사례번호	HQ H292678 (2018.11.23.)
쟁점사항	정부조달 목적의 원산지 판정
사실관계	• [미국 또는 멕시코] - 중간 등급의 석유 원유(Crude Oil) 생산 • [인도] - 미국산 또는 멕시코산 원유를 탈염 및 가열 증류하여 직류 유분 생산 - Merox Oxidation 장치를 이용하여 황 성분 제거 - 특정 첨가제 투입 - 미국 국방군수청 규격을 충족하는 JP5 제트연료 생산
신청인 주장	• 미국 국방군수청이 요구하는 특정 첨가제를 넣는 것 외에는 어떠한 화학적 혼합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인도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판정 결과	• 원유는 인도에서 탈염, 가열 증류 및 Merox 황 제거 공정을 거쳐 원유와 명칭, 특성 및 용도가 다른 제트연료로 전환되며, 특히 CBP 산하 실험실은 석유정제 공정인 증류를 통해 원유가 제트연료로 실질적으로 변형된다고 판단함

유의사항: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원재료, 제조공정 등)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